

#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합천군수 귀하

2021년 5월 8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합천군 의회로부터 「2020회계연도 합천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2021년 3월 29일부터 2021년 4월 8일, 4월30일부터 5월8일까지(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합천군의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합천군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재무관련 회계검사에 관한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와 장부 및 지출증빙서류, 금고의 출납 등을 확인하고 일부 세무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 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한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 합천군 결산검사 위원

대표위원    최정옥 (인)

위    원    정년효 (인)

위    원    하규하 (인)

위    원    이재학 (인)

# 목 차

I.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3
II. 2020회계연도 결산총괄	3
1. 합천군 재정의 개황	3
2. 세입·세출 결산	6
3. 재무제표 요약	7
III. 일반회계 결산	8
1. 세입결산	8
2. 세출결산	12
IV. 특별회계 결산	15
1. 세입결산	15
2. 세출결산	17
V. 재무제표 결산	18
1. 재정상태 및 증감현황	18
2. 재정운영 및 증감현황	19
3.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운영현황	20
VI. 성과보고서	21
VII.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23
1. 기 금	23
2. 채권·채무	26
3.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27
4. 물품증감 및 현재액	27
5. 금고검사	28
VIII. 세입·세출 검사 결과	29
1. 총 평	29
2. 분야별 개선 권고사항	32
3. 수범사례	44
IX. 전년도 결산검사 조치내용	45

# I.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1.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합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결산지침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과의 부합 여부와 세입의 수납과 과오납 정리, 지출 명령의 부합여부, 재정운영의 합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하였습니다.
2. 본 위원들은 결산검사를 위하여 세입·세출 등 제장부의 열람, 해당 부서간 서류 대조 등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검사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3. 주요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세출의 결산, 예비비 결산, 계속비, 명시 및 사고 이월비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물품 증감 현재액 등 입니다.

# II. 2020회계연도 결산총괄

## 1. 합천군 재정의 개황

### 가. 재정여건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포함)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일반회계	세입	580,559,893	634,238,221	645,847,927	732,391,929	762,078,918
	세출	449,074,569	490,906,063	488,906,487	609,511,033	629,129,880
	결산상잉여금	131,485,324	143,332,158	156,941,440	122,880,896	132,949,038
특별회계	세입	39,828,999	43,218,126	40,491,144	40,377,864	37,350,281
	세출	18,844,221	23,127,215	18,473,308	25,790,613	32,996,715
	결산상잉여금	20,984,778	20,090,911	22,017,836	14,587,251	4,353,566
기금	세입	14,172,979	17,832,375	24,251,416	68,135,871	101,558,619
	세출	2,466,435	1,594,334	930,357	4,265,903	48,335,059
	결산상잉여금	11,706,544	16,238,041	23,321,059	63,869,968	53,223,560
총계	세입	634,561,871	695,288,722	710,590,487	840,905,664	900,987,818
	세출	470,385,225	515,627,612	508,310,152	639,567,549	710,461,654
	결산상잉여금	164,176,646	179,661,110	202,280,335	201,338,115	190,526,164

○ **검사결과 분석**

- 합천군의 재정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보조금 등의 수입이 매년 증가한데 기인한 것임. 세출을 주민 수(45,200명)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 규모” 는 현 연도에 13,917,570원임.
- 결산상 잉여금은 190,526,164천원으로 전년 대비 5.7%감소하였음.

나. **재무제표 요약 분석**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비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20년	2,285,302	18,417	2,266,886	599,668	520,711	(78,957)	
2019년	2,305,065	14,007	2,291,058	574,727	487,421	(87,306)	
증감	(19,763)	4,410	(24,172)	24,941	33,290	8,394	

○ **검사결과 분석**

- 2020년 순자산은 2,266,88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4,172백만원이 감소하여 재정상태는 1.07% 감소되었고,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8,394백만원 감소하였음.

다. **지난 5년간 채무 추이**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자치단체 채무계 (a=b+c+d)	0	0	0	0	0	
공 채(b)	0	0	0	0	0	
차입금(c)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d)	0	0	0	0	0	
지방공기업 채무(e)	0	0	0	0	0	
채무총합계 (f=a+e)	0	0	0	0	0	

○ **검사결과 분석**

- 합천군은 2013년 이전에 채무 제로화를 실현한 이후 2020회계연도까지 채무가 없는 건전 재정 기초를 유지하고 있음.

## 라. 재정 건전성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 지표>

관 점	재정지표	산정방식	주의 기준	심각(위기)기준
재정수지	①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frac{(\text{세입} - \text{지출및순융자})}{\text{통합재정규모}}$	25%초과	30%초과
채무관리	② 예산대비채무비율	$\frac{\text{지방채무 잔액}}{\text{총예산}}$	25%초과	40%초과
	③ 채무상환비 비율	$\frac{\text{지방채무 상환액}}{\text{일반재원}}$	12%초과	17%초과
세입관리	④ 지방세 징수액현황	$\frac{\text{당해연도 월별 누적 징수액}}{\text{최근 3년 평균 월별징수액}}$	50%미만	0%미만
자금관리	⑤ 금고잔액 현황	$\frac{\text{당해연도 분기말 잔고}}{\text{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잔고}}$	20%미만	10%미만
공 기 업	⑥ 공기업 부채비율	$\frac{\text{부 채}}{\text{순 자산}}$	400%초과	600%초과
	⑦ 개별공기업 부채비율			

합천군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재정위험 상태가 주의 및 심각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았다.

또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다음과 같다. (\*2020년 결산기준)

$$\text{재정자립도} = 6\% \left[ \frac{(\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text{자치단체 세입결산규모}} \times 100 \right]$$

$$\text{재정자주도} = 50\% \left[ \frac{(\text{자체수입} + \text{자주재원})}{\text{자치단체 세입결산규모}} \times 100 \right]$$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를 더욱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재원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 2. 세입·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세 입 결산액 (가)	세 출 결산액 (나)	세 계 잉여금 (가-나)	세계잉여금 처분내역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보 조 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799,429,200	662,126,595	137,302,605	66,503,395	30,880,035	30,329,540	7,140,354	2,449,280
일반회계	762,078,918	629,129,880	132,949,038	65,393,265	29,072,386	30,263,673	7,108,990	1,110,724
기 타 특별회계	24,554,313	23,459,802	1,094,511	0	229,853	65,867	31,364	767,426
공 기 업 특별회계	12,795,969	9,536,913	3,259,056	1,110,130	1,577,796	0	0	571,130

### 가.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실수납액 (다)	불납결손액 (라)	다음연도 이 월 액 (나-다-라)	비율(%)	
							징수율 (다/나)	정리율 (다-라/나)
계	전년도	773,312,514	777,103,484	772,769,793	728,820	3,604,871	99.4	99.5
	당해년도	823,601,030	803,725,927	799,429,199	114,650	4,182,079	99.5	99.5
일 반 회 계	전년도	732,684,121	735,682,328	732,391,929	728,820	2,561,579	99.5	99.6
	당해년도	786,397,612	765,210,396	762,078,918	114,650	3,016,829	99.6	99.6
기 타 특 별 회 계	전년도	30,198,170	30,896,561	29,853,269	0	1,043,292	96.6	96.6
	당해년도	24,180,321	25,651,090	24,554,312	0	1,096,778	95.7	95.7
공 기 업 특 별 회 계	전년도	10,430,223	10,524,595	10,524,595	0	0	100.0	100.0
	당해년도	13,023,097	12,864,441	12,795,969	0	68,472	99.5	99.5

## 나.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가)	예산현액 (나)	지출액 (다)	다음연도 이월액 (라)	집행잔액 (나-다-라)
계	전년도	673,108,547	773,312,514	635,301,646	99,900,383	38,110,485
	당해년도	723,649,495	823,601,030	662,126,595	127,712,971	33,761,464
일 반 회 계	전년도	636,264,423	732,684,121	609,511,033	96,466,843	26,706,245
	당해년도	689,930,769	786,397,612	629,129,880	124,729,325	32,538,407
기 타 특 별 회 계	전년도	27,914,184	30,198,170	17,942,246	1,455,506	10,800,418
	당해년도	22,724,815	24,180,321	23,459,802	295,721	424,798
공기업 특 별 회 계	전년도	8,929,940	10,430,223	7,848,367	1,978,034	603,822
	당해년도	10,993,911	13,023,097	9,536,913	2,687,925	798,259

## 3.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비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20년	2,285,302	18,417	2,266,886	599,668	520,711	(78,957)	
2019년	2,305,065	14,007	2,291,058	574,727	487,421	(87,306)	
증감	(19,763)	4,410	(24,172)	24,941	33,290	8,394	

### ○ 검사결과 분석

- 2020년 순자산은 2,266,88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4,172백만원이 감소하여 재정상태는 1.07% 감소되었고,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8,394백만원 감소하였음.

### Ⅲ. 일반회계 결산

#### 1. 세입결산

##### 가. 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가)	실 수 납 액 (나)	미수납액 (가-나)	비 율 (나/가)
	예산현액				
전 년 도	636,264,423	735,682,328	732,391,929	3,290,399	99.5
	732,684,121				
당 해 연 도	계	765,210,396	762,078,918	3,131,479	99.6
	지방세수입	28,770,964	27,807,691	963,273	96.7
	세 외 수 입	22,469,922	20,301,717	2,168,205	90.4
	지방교부세	276,643,613	276,643,613	0	100.0
	조정교부금등	28,241,201	28,241,201	0	100.0
	보 조 금	240,494,713	240,494,713	0	100.0
	보전수입등 내 부 거 래	168,589,983	168,589,983	0	100.0
	170,028,188				

#### ○ 검사결과 분석

- 예산현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7.3% 증가하였고 징수율은 99.6%로 0.1% 증가함.
- 지방세의 징수율은 96.7%로 전년 94.4%에 비하여 2.3% 증가하였고
- 세외수입 징수율은 90.4%로 전년도 91.6%에 비하여 1.2% 감소함.
- 수납액은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일치하였음.



## 나. 지방세 수납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가)	실수납액 (나)	미수납액 (가-나)	비율 (나/가)
전년도		17,266,000	19,475,014	18,383,323	1,091,691	94.4
당 해 연 도	합계	26,188,500	28,770,964	27,807,691	963,273	96.7
	주민세	595,500	568,401	548,853	19,548	96.6
	재산세	3,893,000	4,034,275	3,943,830	90,445	97.8
	자동차세	4,562,000	6,279,213	6,077,155	202,058	96.8
	담배소비세	2,601,000	2,767,393	2,767,393	0	100.0
	지방소비세	9,676,000	9,641,700	9,641,700	0	100.0
	지방소득세	4,586,000	4,778,368	4,569,438	208,930	95.6

### ○ 검사결과 분석

- 지방세 징수율은 96.7%로 전년도에 비해 2.3% 증가함.
- 당해연도 미수납액은 963,273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징수실적이 향상됨.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국내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납기 내 징수 노력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의 당해연도 징수율이 향상되었으나, 고액채납자의 담세력 악화로 지난해도 이월체납액 징수율은 감소함.

### □ 최근 3년 지방세 증감분석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총액	과오납액	실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액	이월액
2018년	18,039,000	18,461,324	17,333,896	296,602	17,037,294	1,424,030	220,589	1,203,441
2019년	17,266,000	19,475,014	18,733,386	350,063	18,383,323	1,091,691	237,940	853,751
2020년	26,188,500	28,770,964	28,278,604	470,913	27,807,691	963,273	36,654	926,619

- 전년대비 지방세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증가사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지방 소비세율 인상 및 안분방식 변경으로 시·군으로 배분되는 금액 신규 세입예산 편성과 재산세 과세표준 인상이 주된요인임.

### 다. 세외수입 수납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가)	실수납액 (나)	미수납액 (가-나)	비 율 (나/가)
전 년 도	20,163,325	26,294,044	24,095,336	2,198,708	91.6
합 계	19,114,363	22,469,922	20,301,717	2,168,205	90.4
재산임대수입	138,201	171,948	102,354	69,594	59.5
사 용 료 수 입	1,372,843	1,726,415	1,615,806	110,609	93.6
수 수 료 수 입	1,177,086	1,371,026	1,317,457	53,569	96.1
사 업 수 입	1,618,895	1,563,367	1,559,085	4,282	99.7
징 수 교 부 금	560,500	498,620	198,620	0	100.0
이 자 수 입	1,525,000	1,657,848	1,653,241	4,607	99.7
재산매각수입	91,000	130,764	130,764	0	100.0
부 담 금	0	43,684	8,359	35,325	19.1
과장금및과태료등	474,384	852,868	585,219	267,649	68.6
기 타 수 입	11,706,454	12,766,119	12,346,722	419,397	96.7
지난년도수입	450,000	1,687,262	484,089	1,203,173	28.7

#### ○ 검사결과 분석

-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징수액이 15.7% 감소하였고 징수율은 1.2% 감소하였음.
- 부담금, 재산임대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의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해당 부서의 면밀한 체납원인 분석과 징수대책 수립 등 다각적인 징수노력이 요구됨.

### 라. 미수납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미수납액(가)	결손처분액(나)	이월액(가-나)
전 년 도	3,290,399	728,820	2,561,579
당 해 연 도	3,131,479	114,650	3,016,829

□ 결손처분액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결손처분액	사 유 별					
		무재산	채납처분 중 지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 족	기 타
전 년 도	728,820	641,840	16,045	8,645	32,153	27,634	2,503
합 계	114,650	23,963	-	746	67,592	22,034	315
지 방 세	36,654	2,500	-	746	12,865	20,543	-
세 외 수 입	77,996	21,463	-	-	54,727	1,491	315

○ 검사결과 분석

- 과감한 결손처분은 행정낭비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산 발견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채권확보에 대한 시기를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됨.

□ 미수납 이월액의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미수납 이월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또는부도	자금압박	기 타
전 년 도	2,561,579	57,244	19,116	1,825,624	25,641	-	214,140
합 계	3,016,828	387,245	129,354	743,493	148,074	2,492	1,414,579
지 방 세	926,619	93,632	14,235	122,559	11,130	2,492	682,571
세 외수입	2,090,209	293,613	115,119	620,934	136,944	-	732,008

○ 검사결과 분석

- 미수납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 17%(455,249천원) 증가하였으며, 징수불가능액은 결손처분하여 미수납액 최소화에 노력이 요구됨.

## 2.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가)	예산현액 (나)	지출액 (다)	이 월 액 (라)	집행잔액 (나-다-라)	집행률 (다/나)
전 년 도	636,264,423	732,684,121	609,511,033	99,951,383	26,706,245	83.2
당해연도	689,930,769	786,397,612	629,129,880	124,729,325	32,538,407	80

### ○ 검사결과 분석

- 세출예산액(723,649,495천원)과 전년도 이월금(99,951,383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823,601,030천원으로 예산전용 18건 / 663,090천원을 집행함.
- 일반회계 지출액은 629,129,880천원, 집행률은 80%로서 전년대비 3.2% 감소하였고 미집행 내역 중 이월액 124,729,325천원이되고 집행잔액은 32,538,407천원 발생됨.

### □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
전 년 도	78,101,721	0	1,350,368	76,751,353
당해연도	89,678,466	0	663,090	89,015,376

### ○ 검사결과 분석

- 정책사업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예산 이용은 없었고,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예산 전용은 663,090천원으로, 2019회계연도보다 687,278천원 감소함. 예산의 이체는 89,015,376천원으로 전년대비 12,264,023천원이 증가하였음.

□ 예비비 지출현황

-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2,101,712천원으로서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지출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12,101,712	9,574,602	4,237,348	6,337,860	1,526,502

○ 사업별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합 계	12,101,712	9,574,602	4,237,348	6,337,860	1,526,502
합천박물관 유지관리	5,838	5,370	5,370	0	468
합천영상테마파크 유지관리	21,778	14,562	14,562	0	7,216
대장경테마파크 유지관리	19,067	15,751	15,751	0	3,316
7.28. ~ 8.11. 수해피해 복구사업	61,311	0	0	61,311	0
복지관시설물 관리	7,513	6,881	6,881	0	631
문화예술회관 관리	6,667	6,360	6,360	0	306
7.28. ~ 8.11. 호우피해 복구사업	2,151,150	5,037	5,037	2,146,112	0
7.28. ~ 8.11. 호우피해 복구사업	21,184	0	0	21,184	0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3,488	3,488	3,071	0	416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1,053	801	373	0	679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1,096,881	1,096,881	1,096,881	0	0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251,000	39,004	39,004	0	211,995
청소년 활동운영 지원	4,605	4,605	4,605	0	0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시군)	2,160	2,160	2,160	0	0
전통시장 지원	2,160	2,160	2,160	0	0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육성	43,500	43,500	43,500	0	0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육성	21,000	21,000	21,000	0	0
7.28~8.11 호우피해 복구사업(경비 행장 이차등록시설)	38,721	0	0	38,721	0
7.28~8.11 호우피해 복구사업	805,406	805,406	46,216	759,125	65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7.28.~8.11. 호우피해 시설복구사업 (도로)	754,690	754,690	0	754,690	0
7.28.~8.11. 호우피해 시설복구사업 (도로)	553,521	553,521	42,534	510,987	0
7.28~8.11 호우피해 복구사업	52,236	49,525	49,525	0	2,710
7.28~8.11 호우피해 복구사업	892,564	892,564	892,564	0	0
재해복구사업	1,362,000	1,362,000	72,525	0	1,289,475
재해복구사업	360,000	360,000	360,000	0	0
제9호 및 제10호 태풍 피해복구	131,001	131,001	131,001	0	0
7.28 ~ 8.11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 (국비보조사업)	17,861	0	0	17,861	0
7.28 ~ 8.11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 (도비보조사업)	85,330	85,330	82,042	0	3,288
7.28 ~ 8.11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 (국도비보조사업)	1,899,387	1,899,387	31,098	1,868,289	0
기금전출금	775,000	775,000	775,000	0	0
정양늪 생태공원 운영 관리	1,535	1,407	1,407	0	127
7.28. ~ 8. 11. 호우피해 복구사업	12,664	0	0	12,664	0
농정기반조성	6,765	5,885	5,885	0	880
황매산 수목원 관리	2,160	2,160	2,078	0	81
7.28. ~ 8.11. 호우피해 복구사업	125,774	125,774	0	125,774	0
7.28. ~ 8.11. 호우피해 복구사업 (예비비)	398,034	398,034	394,542	0	3,491
7.28. ~ 8.11. 호우피해 복구사업	21,142	21,142	0	21,142	0
내수면 어업개발 및 관리	1,535	180	180	0	1,355
농산물유통 지원	17,105	17,105	17,105	0	0
농업재해복구 지원	35,814	35,814	35,814	0	0
보건행정 업무지원	31,112	31,112	31,112	0	0

## IV. 특별회계 결산(기타 · 공기업)

### 1. 세입결산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가)	수 납 액 (나)	미수납액 (다=가-나)	비율 (나/가)	
전 년 도	40,628,393	41,421,156	40,377,864	1,043,292	97.5	
당 해 연 도	계	37,203,418	38,515,531	37,350,281	1,165,250	97.0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13,023,097	12,864,441	12,795,969	68,472	99.5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491,999	1,505,797	1,505,797	0	100.0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1,553,178	1,652,894	1,555,474	97,420	94.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50,248	1,654,642	847,171	807,471	51.2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833,414	919,920	862,008	57,912	93.7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4,189,575	4,162,331	4,162,331	0	100.0
	수 질 개 선 특별회계	8,661,286	8,678,805	8,672,558	6,247	99.9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6,600,621	7,076,701	6,948,973	127,728	98.2

#### ○ 검사결과 분석

-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에 비해 7.5%(3,027,583천원) 감소한 37,350,281천원이며 수납실적은 97.0%로 전년도에 비해 0.5% 감소하였음.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는 90%이상의 수납률을 보이는 반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수납률은 극히 낮아 해당 부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시효소멸)	이월액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기타
합 계	1,165,250	-	700,511	13,450	142,766	308,522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68,472	-	-	-	-	68,472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97,420	-	29,277	-	36,417	31,726
의료급여특별회계	807,471	-	651,904	-	7,748	147,819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57,912	-	-	-	56,731	1,181
수질개선특별회계	6,247	-	-	-	-	6,247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127,728	-	19,330	13,450	41,870	53,077

## ○ 검사결과 분석

- 미수납건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징수대책이 필요함.  
특히, 특별회계 전체 미수납액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미수납건에 대하여는 원인파악 및 분석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적절한 징수 방법 모색으로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지방세에 준하는 체납처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재산조회를 통해 파악된 재산에 대한 압류 이행 등으로 징수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하고 무재산으로 판명된 경우 과감한 결손처분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 2. 세출결산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가)	지 출 액 (나)	이 월 액 (다)	집행잔액 (가-나-다)	비 율 (나/가)
전 년 도		40,628,393	25,790,613	3,433,540	11,404,240	63.5
당 해 연 도	계	37,203,416	31,525,193	2,983,645	1,223,059	85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 회 계	13,023,096	9,536,912	2,687,925	798,259	73
	공영 개발 사업 특별 회 계	1,491,999	1,441,000	0	50,999	97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 회 계	1,553,178	1,471,519	0	81,659	95
	의료급여기금 특별 회 계	850,248	829,333	0	20,915	98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 회 계	833,414	611,013	39,014	183,387	73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 회 계	4,189,574	4,109,003	65,867	14,704	98
	수 질 개 선 특별 회 계	8,661,286	8,400,054	190,839	70,393	97
	농업 발전 기 금 특별 회 계	6,600,621	6,597,878	0	2,743	99

### ○ 검사결과 분석

- 예산현액 437,203,416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31,525,193천원이며 집행비율은 85%로서 전년에 비해 21.5% 증가하였으며, 이월액 2,983,645천원을 제외한 1,223,059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음.
- 전년도에 비해 집행률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공사기간 부족과 관계부서 협의 지연으로 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3개 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 목적에 맞는 사업발굴과 홍보 등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V. 재무제표 결산

### 1. 재정상태 및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19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2,285,301	2,305,065	(-)19,764	(-)0.9
I . 유 동 자 산	199,000	208,921	-9,921	(-)4.7
II . 투 자 자 산	12,526	12,929	-403	(-)3.1
III . 일 반 유 형 자 산	106,389	95,347	11,042	11.6
IV . 주 민 편 의 시 설	280,767	268,093	12,674	4.7
V . 사 회 기 반 시 설	1,684,924	1,718,495	-33,571	(-)2.0
VI . 기 타 비 유 동 자 산	1,695	1,280	415	32.4
부 채	18,471	14,007	4,464	31.9
I . 유 동 부 채	11,970	6,842	5,128	74.9
II . 장 기 차 입 부 채	-	0	0	0
III . 기 타 비 유 동 부 채	6,447	7,165	-718	-10.0
순 자 산	2,266,886	2,291,058	(-)24,172	(-)1.1
I . 고 정 순 자 산	2,073,525	2,082,998	-9,473	(-)0.5
II . 특 정 순 자 산	52,736	64,112	-11,376	(-)17.7
III . 일 반 순 자 산	140,625	143,948	(-)3,323	(-)2.3

#### ○ 검사결과 분석

- 2020회계연도 말 총자산은 2,285,301백만원으로 전년도의 2,305,065백만원보다 19,764백만원(0.9%) 감소하였는데, 이는 건설중인자산의 완공처리 및 정리에 의한 것임. 유동자산의 총액은 199,000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9,921백만원 감소하였으며 비유동성 자산의 총액은 2,086,301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9,834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또한, 부채는 18,471백만원으로 전년도의 14,007백만원보다 4,464백만원 증가하였는데, 유동부채의 총액은 11,970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5,128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납 예정액의 증가에 의한 것임.

## 2. 재정운영 및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19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I. 사업순원가 (가 - 나)	206,995	211,305	(-)4,310	(-)2.0
가. 사업총원가	427,821	399,171	28,650	7.2
나. 사업수익	220,826	187,866	32,960	17.5
II. 관리운영비	72,050	69,241	2,809	4.1
III. 배분비용	20,840	19,009	1,831	9.6
IV. 배분수익	18,304	21,036	-2,732	(-)13.0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281,580	278,519	3,061	1.1
VI. 일반수익	360,538	365,825	-5,287	(-)1.4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78,958	(-)87,306	(-) 8,348	(-)9.6

### ○ 검사결과 분석

- 2020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427,821백만원에서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220,826백만원을 차감한 206,995백만원이고 관리운영비(72,050백만원), 배분비용(20,840백만원) 및 배분수익(18,304백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281,580백만원임.
- 한편,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360,538백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78,958백만원으로 전년도의 (-)87,306백만원보다 8,348백만원(9.6%)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수익의 증가가 운영비의 증가보다 큰 원인에 의한 것임.

### 3. 상수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운영현황

#### <총괄원가계산서>

구 분		연 도 별		비 고
		2020년(당기)	2019년(전기)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	연간생산량(m <sup>3</sup> )(A)	4,701,534	4,595,936	
	연간조정량(m <sup>3</sup> )(B)	2,420,892	2,310,606	
	급수수익(C)	2,060,559,310	2,329,234,170	
	총괄원가(D)	7,434,446,082	6,612,994,409	
	결함액(E)	5,373,886,772	4,283,760,239	총괄원가-급수수익(E=D-C)
	m <sup>3</sup> 당요금(원/m <sup>3</sup> )(F)	851.16	1,008.06	급수수익/연간조정량(F=C/B)
	m <sup>3</sup> 당원가(원/m <sup>3</sup> )(G)	3,070.95	2,862.02	총괄원가/연간조정량(G=D/B)
	요금현실화율(%)	27.72	35.22	m <sup>3</sup> 당요금/m <sup>3</sup> 당원가(F/G*100)
	인상요인(%) (I)	260.80%	183.91%	(총괄원가-급수수익)/급수수익

#### ○ 검사결과 분석

- 지방상수도의 경우 사용요금은 m<sup>3</sup> 당 약 851원이고, m<sup>3</sup> 당 생산원가는 약3,070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27.72%로 여전히 저조한 실정임.

## VI. 성과보고서

합천군은 본 회계연도의 『행복한 군민 희망찬 합천』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20개)-정책사업목표(76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성과목표의 성과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76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20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부 서 명	성 과 목 표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달성률
계	20	76	208	16	126	66	63
기 획 감 사 관	1	3	7	0	4	3	57
문 화 예 술 과	1	5	10	1	4	5	50
관 광 진 흥 과	1	3	9	0	3	6	33
행 정 과	1	5	15	2	7	6	60
재 무 과	1	2	9	1	7	1	89
주 민 복 지 과	1	7	20	2	10	8	60
민 원 봉 사 과	1	2	10	1	7	2	80
경 제 교 통 과	1	7	16	1	9	6	63
건 설 과	1	6	13	2	9	2	85
안 전 총 괄 과	1	7	12	1	11	0	100
도 시 건 축 과	1	8	11	0	6	5	55
환 경 위 생 과	1	8	24	0	22	2	92
상 하 수 도 과	1	2	3	0	3	0	100
농 업 기 술 센 터 과 농 정 과	1	2	8	1	2	5	38
농 업 기 술 센 터 과 농 산 립 과	1	2	11	0	8	3	73
농 업 기 술 센 터 과 농 축 산 과	1	2	14	4	5	5	64
농 업 기 술 센 터 과 농 농 업 유 통 과	1	1	4	0	2	2	50
농 업 기 술 센 터 과 농 농 업 지 도 과	1	1	3	0	2	1	67
보 건 소	1	2	8	0	5	3	63
의 회 사 무 과	1	1	1	0	0	1	0

## ○ 검사결과 분석

- 안전총괄과 외 1개 부서는 100%를 달성한 반면, 의회사무과(0%), 관광진흥과(33%), 농정과(38%) 등은 달성도가 저조함.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럼에도 목표달성이 쉬운 지역적인 지표 설정으로 설정 근거가 미흡하거나, 측정방법이 타당하지 않은 지표 등이 확인되었고, 목표치 미달성 및 초과 달성지표에 대한 원인 분석이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실적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사례들이 확인되었음.

## Ⅶ.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 1. 기금

#### 가. 기금조성 총괄

2020년도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서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종 류 별	전년도말 잔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잔액
		조 성 액	사 용 액	
합 계	62,574,415	38,984,205	48,335,059	53,223,560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1,141,659	25,580,867	41,800,000	24,922,526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13,256,080	5,264,793	0	18,520,873
체육문예진흥기금	3,098,504	44,983	43,500	3,099,987
재난관리기금	1,835,367	7,043,469	6,014,626	2,864,21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2,266,905	539,984	372,985	2,433,905
합천군 양성평등기금	523,248	10,130	23,000	510,378
아동복지기금	0	412,011	0	412,011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323,747	64,386	69,848	318,285
옥외광고발전기금	71,856	11,035	720	82,171
식품진흥기금	57,048	12,546	10,380	59,215

## 나. 기금조성 세부사항

종 류 별	근 거 법 규	설 치 목 적	운용관서(설치연도)
			재 원 조 달
합천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회계,기금,상호 간에 재원을 예탁·예수하는 등 효율적인 자원 활용	기획감사관(2020)
			일반회계 전입금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합천군 주요 농축산물의 급격한 시장 가격 변동에 대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농업유통과(2015)
			일반회계 전입금 등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운용 관리 조례	합천군 주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사업 지원	체육시설과(1997)
			이자수입
재난관리기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위험 요인 해소 및 재난대응,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함	안전총괄과(1998)
			자치단체 출연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합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도모	경제교통과(2000)
			일반회계 전입금,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노인이동여성과(2011)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등
아동복지기금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아동계층의 보호와 복지증진	노인이동여성과(2019)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등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합천군 소속공무원 중 무주택 공무원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 제공	행정과(2011)
			목민관 사용료, 복지카드 적립금, 이자수입
옥외광고발전기금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도시건축과(2009)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법 제89조,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주민건강증진 도모	환경위생과(200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



○ **검사결과 분석**

- 보유기금은 전년도말 10종 62,574,415천원이었으며, 2020연도에는 합천군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10종의 기금조성액 38,984,205천원 중 48,335,059천원을 사용하여 2020연도말 현재 53,223,560천원을 보유하고 있음.
- 재원조달은 자치단체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금융상품 이자율 하락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임.
- 10종의 기금 모두 관련 조례와 설치목적에 따라 관리 운용하고 있음.

**다.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년평균 증가율
전	년	10,249,892	11,706,544	16,238,042	23,321,059	62,574,415	57.2
조	해	3,923,087	6,125,831	8,013,374	44,814,812	38,984,205	77.5
당	해	2,466,435	1,594,334	930,357	4,265,903	48,335,059	110.4
당	해	11,706,544	16,238,042	23,321,058	63,869,968	53,223,560	46

○ **검사결과 분석**

- 합천군의 기금은 최근 5년간 평균 46%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는 조성에 비해 사용률이 낮고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과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적립액이 높기 때문이며,
- 확보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내용 발굴이 필요함.

## 2. 채권·채무

### 가. 채권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발 생 액	당 해 연 도 소 멸 액	당 해 연 도 말 잔 액
합 계		9,321,394	2,094,968	1,951,364	9,464,998
일 반 회 계		3,269,980	-	267,610	3,002,370
특 별 회 계	소 계	6,051,414	2,094,968	1,683,754	6,462,627
	기 초 생 활 보 장	105,536	419	8,802	97,154
	의 료 급 여 기 금	784,649	94,548	6,052	873,145
	농 업 발 전 기 금	5,161,227	2,000,000	1,668,900	5,492,327

#### ○ 검사결과 분석

-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9,321,394천원에서 당해연도 2,094,968천원이 발생하고 1,951,364천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9,464,998천원을 보유하고 있음.
- 채권은 일반회계 2종(공무원 학자금, 기타) 및 특별회계 3종, 총 5종임.

### 나. 채무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발 생 액	당 해 연 도 소 멸 액	당 해 연 도 말 잔 액
합 계		0	0	0	0
일 반 회 계		0	0	0	0
특 별 회 계	기타특별회계	0	0	0	0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0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채무는 없으며 당해연도 현재액 역시 0원임.

### 3.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전년도말 815,784,316천원에서 당해연도 49,829,154천원을 취득하고 737,925천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864,875,544천원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토 지 : 47,407,973m <sup>2</sup> -----	289,971,792천원
- 건 물 : 235,961m <sup>2</sup> -----	223,069,286천원
- 기 타 : -----	351,834,466천원

### 4.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1,048종 9,208,098천원이며 당해연도 신규취득 등 1,756,523천원, 매각·폐기 등 739,663천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 전년보다 93종 1,016,860천원이 증가한 1,141종 10,224,958천원임.

## 5. 금고 검사

### □ 현 황

(단위 : 원)

구 분	세입 결산액㉑	세출 결산액㉒	잔액㉓=㉑-㉒
합 계	799,429,199,155	662,126,594,746	137,302,604,809
일 반 회 계	762,078,917,938	629,129,879,814	132,949,038,124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2,795,968,604	9,536,912,896	3,259,055,708
상 수 도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2,795,968,604	9,536,912,896	3,259,055,708
기 타 특 별 회 계	24,554,313,013	23,459,802,036	1,094,510,977
기 초 생 활 보 장 특 별 회 계	1,555,473,824	1,471,519,000	83,954,824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847,170,925	829,333,646	17,837,279
공 영 개 발 사 업 특 별 회 계	1,505,797,339	1,441,000,000	64,797,339
농 공 지 구 조 성 사 업 특 별 회 계	862,008,175	611,013,270	250,994,905
하 천 골 재 채 취 운 영 특 별 회 계	4,162,331,100	4,109,003,380	53,327,720
농 업 발 전 기 금 특 별 회 계	6,948,973,000	6,597,878,680	351,094,320
수 질 개 선 특 별 회 계	8,672,558,650	8,400,054,060	272,504,590

### ○ 검사결과 분석

- 금고 검사에 있어서 일반회계 1, 특별회계 8(공기업1, 기타 7)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액 잔액과 군 금고 출납계산서와 일치함.
- 군금고의 약정기간은 2019.1.1~2021.12.31.(3년)이며, 매년 금고에 대한 검사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음.
- 금고의 지정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과 「합천군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에 의하여 경쟁의 방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지정하였으며, 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회계별로 구분하여 2개의 금융기관(농협합천군지부, 경남은행)에 분산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음.

## Ⅷ.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 1. 총 평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총 세입은 799,429백만원이며,
- 총 세출은 662,127백만원이며,
- 잉여금은 137,303백만원이며,
- 순세계 잉여금은 2,449백만원 임.

#### <세입·세출결산 요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A)	세출(B)	잉 여 금 ( A - B )			
			소 계	이 월 금	보 조 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799,429	662,127	137,303	127,713	7,140	2,449
일 반 회 계	762,079	629,130	132,949	124,729	7,109	1,111
공기업특별회계	12,796	9,537	3,259	2,688	0	571
기타특별회계	24,554	23,460	1,095	296	31	767

####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5년 평균증가율	
세 입 ( A )	620,389	677,456	686,339	772,770	799,429	6.5	
세 출 ( B )	467,919	514,033	507,380	635,302	662,127	9.1	
잉여금 (A-B)	소 계	152,470	163,423	178,959	137,468	137,303	-2.6
	이 월 금	83,384	91,732	100,204	98,462	127,713	11.2
	보 조 금 실 제 반 납 금	3,611	3,696	2,601	5,200	7,140	18.6
	순세계잉여금	65,475	67,996	76,155	33,806	2,449	-56.0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종합적인 검사 의견은

- 예산편성과 건전재정운용 원칙을 준수하여 대부분의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으나, 2020회계연도 잉여금 중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2019회계연도 5,200백만원 보다 18.6% 증가한 7,140백만원으로 예산집행준비 단계에서 치밀한 계획 수립으로 자주재원이 빈약한 군 재정 형편상 보조금 반납비율을 최소화 할 것을 권고함.

○ 세입결산내역을 분석해보면

〈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전년대비	2020	전년대비
				(%)		(%)
계		686,339	772,770	112.59	779,429	100.86
자	체 수 입	50,228	45,887	91.36	53,733	117.10
	지 방 세	17,037	18,383	107.90	27,808	151.27
	세 외 수 입	33,191	27,504	82.87	25,925	94.26
이	전 수 입	461,272	528,196	114.51	549,489	104.03
	지 방 교 부 세	276,975	316,802	114.38	276,643	87.32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 전 금	19,841	21,416	107.93	28,241	100.86
	보 조 금	164,456	189,978	115.52	244,605	128.75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		174,839	198,687	113.64	196,207	98.75

- 2020회계연도 세입은 전년대비 100.9% 증가한 779,429백만원으로 이 중 보조금 등 이전수입이 70%이며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7%로 매우 낮은 편임.
- 2020회계연도 자체수입 총액은 53,733백만원으로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전년대비 51% 증가한 27,808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세출결산내역을 분석해보면

<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전년대비	2020	전년대비 (%)
				(%)		
계		507,380	635,302	125.21	662,127	104.22
일반회계		488,906	609,511	124.67	629,130	103.22
	일반공공행정	24,848	61,964	249.37	57,878	93.41
	공공질서및안전	11,989	13,878	115.75	17,337	124.93
	교육	4,355	4,727	108.54	3,470	73.41
	문화및관광	51,704	55,631	107.6	50,810	91.33
	환경보호	41,432	60,206	145.31	59,370	98.61
	사회복지	81,894	97,519	119.08	110,254	113.06
	보건	8,182	8,924	109.06	9,442	105.8
	농림해양수산	99,825	120,416	120.63	127,386	105.79
	산업·중소기업	5,022	7,242	144.19	11,583	159.95
	수송및교통	30,085	36,891	122.62	36,874	99.95
	국토및지역개발	66,041	78,476	118.83	78,488	100.02
	기타	63,529	63,638	100.17	66,238	104.09
특별회계		18,473	25,791	139.61	32,997	127.94
	공기업특별회계	6,238	7,848	125.81	9,537	121.51
	기타특별회계	12,235	17,942	146.64	23,460	130.75

-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은 662,127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35,302백만원보다 104.22% 증가했으며, 분야별 예산 중 가장 증가폭이 큰 분야는 159.95% 증가한 산업·중소기업 분야로서 타 분야에 비해 증가폭이 매우 높은 편임.
- 산업·중소기업 분야를 제외한 타 분야에서는 대체로 증가폭이 균형을 이루고 있음.

## 2. 분야별 개선 권고사항

### 1) 2020회계연도 잉여금 발생 분석

#### ○ 잉여금 현황

- 2020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총액은 예산현액의 16.7%인 137,302,604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잉여금은 16.1%인 132,949,038천원이고, 특별회계 잉여금은 특별회계 예산현액의 11.7%인 4,353,566천원임.

#### ○ 문제점

- 결산상 잉여금 비율을 보면 총16.7%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 잉여금은 16.1%, 특별회계 잉여금은 11.7%가 발생 하였음.

#### ○ 개선 및 권고사항

- 결산상 잉여금 비율이 높은 발생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해연도 예산을 원만히 집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예산확보 계획 수립시 정확한 추계를 통해 향후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 할 것을 권고함.

### 2)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철저

#### ○ 문제점

- 2020회계연도 행정기관의 부과 착오로 인한 과오납금액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과오납 환급액이 작년대비 증가함.
- 일반회계 미수납액 3,016,828천원 중 납세태만이 743,492천원 차지함.

####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
- 적극적인 세무행정으로 체납액을 줄이기 바람.



### 3)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강구

#### ○ 현황

(단위 : 건)

부서명	성과목표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달성률
기획감사관	1	3	7	0	4	3	57%
문화예술과	1	5	10	1	4	5	50%
관광진흥과	1	3	9	0	3	6	33%
행정과	1	5	15	2	7	6	60%
주민복지과	1	7	20	2	10	8	60%
경제교통과	1	7	16	1	9	6	63%
도시건축과	1	8	11	0	6	5	55%
농정과	1	2	8	1	2	5	38%
축산과	1	2	14	4	5	5	64%
농업유통과	1	1	4	0	2	2	50%
농업지도과	1	1	3	0	2	1	67%
보건소	1	2	8	0	5	3	63%
의회사무과	1	1	1	0	0	1	0%

※달성률 70%미만 반영

#### ○ 문제점

- 부서에서 정한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달성률이 매우 저조함.
- 일부 부서에서는 목표한 성과를 넘어 초과달성한 부서도 있지만 미달성 부서가 많음.

#### ○ 개선 및 권고사항

- 부서에서는 처음부터 달성 가능한 성과 목표를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달성률 70%미만의 성과지표는 목표치 달성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 할 것을 권고함.

#### 4) 특별회계 세출분야 예산집행 미흡

#####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가)	지 출 액 (나)	이 월 액 (다)	집행잔액 (가-나-다)
전 년 도		40,628,393	25,790,613	3,433,540	11,404,240
당 해 연 도	계	37,203,418	32,996,712	2,983,645	1,223,054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13,023,097	9,536,912	2,687,925	798,258
	공영개발사업 특 별회계	1,491,999	1,441,000	0	50,999
	기초생활보장기금 특 별회계	1,553,178	1,471,519	0	81,659
	의료급여기금 특 별회계	850,248	829,333	0	20,914
	농공지구조성사업 특 별회계	833,414	611,013	39,014	183,386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4,189,575	4,109,003	65,867	14,704
	수 질 개 선 특별회계	8,661,286	8,400,054	190,839	70,392
	농업발전기금 특 별회계	6,600,621	6,597,878	0	2,742

##### ○ 문제점

- 예산현액 37,203,418천원에 대한 이월액은 2,983,645천원이며 이월액이 예산현액 대비 8%로 수준임.
- 이월액이 높은 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 목적에 맞는 사업 발굴과 홍보 및 조기사업추진 등 이월액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이월제도는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못할 경우이월은 가능하나,
- 이월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개발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망됨.

5) 보조금 실제 반납액 과다 발생

○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A)	세출(B)	잉 여 금 ( A - B )			
			소 계	이월금	보 조 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799,429	662,127	137,303	127,713	7,140	2,449
일 반 회 계	762,079	629,130	132,949	124,729	7,109	1,111
공기업특별회계	12,796	9,537	3,259	2,688	0	571
기타특별회계	24,554	23,460	1,095	296	31	767

- 2020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823,601,030천원이나 세입 결산액은 24,171,831천원이 감소한 799,429백만원, 세출 결산액은 161,474,435천원 감소한 662,127백만원으로 그 중 보조금 반납액이 7,140백만원임.
- 중앙 및 경상남도로부터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를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여 반납하는 것은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됨.

## ○ 문제점

-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20%정도 감소되었으며 특히 보조금은 무려 70억여 원이나 반납처리 되었음.
- 세출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에 따라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편성해야 함에도 실제 소요액 보다 많이 편성함으로써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음.

##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 편성시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과 정확한 수요 측정으로 과다하게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 특히 공무원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 예산을 자체수입이 빈약한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 할 것을 권고함.
- 앞으로 국도비를 확보한 후 사전에 치밀한 계획수립과 조기집행을 실시하여 미집행되는 사업을 줄여 나가기를 바라며,
-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해주시기를 바랍.

## 6)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이행

### ○ 문제점

-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3,016,828천원임.  
이 중 행방불명, 무재산, 폐업,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미수납 된 금액이 69%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 개선 및 권고사항

- 체납자 재산조회 및 조사를 통하여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이행하기 바랍.

## 7) 예산대비 집행잔액 과다발생

### ○ 세부사업별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이월액	지출액	예산대비 집행잔액
투자기반확충	5,120,930	753,635	4,123,905	243,389
인구증가시책	1,202,200	0	1,021,171	181,028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587,832	0	567,234	20,597
합천 옥전고분군 정비	1,430,180	728,316	605,961	18,274
관광지 시설물 관리	1,69,4247	246,413	1,416,556	31,278
합천영상테마파크 유지관리	1,640,820	418,448	1,584,308	31,592
강소형관광지 기반구축	1,649,272	66,646	1,567,397	19,888
체육공원 관리	901,077	120,795	713,832	66,449
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	2,992,678	353,843	2,511,208	127,627
가회체육공원 조명탑 설치	576,220	0	501,293	74,926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지원	1,130,000	0	736,386	393,613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지원	660,000	0	444,114	215,885
생활체육시설 확충	1,423,945	355,846	1,050,935	17,163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470,000	0	1,397,837	72,162
청사관리	940,739	0	809,646	131,092
호국정신 함양	1,196,190	0	1,139,960	38,460
노인복지시설 기반구축	616,000	386,000	251,774	188,225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733,400	0	703,900	20,650
아동급식 지원	828,800	0	453,443	324,898
가정양육수당 지원	537,623	0	479,171	10,229

세부사업	예산현액	이월액	지출액	예산대비 집행잔액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697,664	0	630,881	66,782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659,270	0	640,022	19,247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2,235,812	135,562	1,500,174	598,767
버스업계 지원	1,300,000	0	1,229,422	70,578
운수업체 지원	2,100,000	0	1,717,119	382,880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689,000	0	540,540	114,864
공공근로사업	509,339	0	487,401	21,937
새로운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500,000	0	472,948	27,051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	14,358,241	915,138	13,384,838	58,264
농업기반정비-시군수리시설개보수	1,402,176	0	1,386,427	15,748
농업기반시설물 관리	10,104,258	200,327	9,855,049	48,881
재해위험지역정비(재해위험저수지)	1,687,371	442,342	1,198,695	46,333
양수장 임시대책 시설개선사업	2,466,000	1,375,504	706,766	383,729
가회 북암교 ~ 대기마을(군도6호선)	2,778,060	350,314	2,180,845	246,899
농어촌도로 확충 및 관리	7,082,666	1,225,117	5,781,514	76,034
7.28.~8.11. 호우피해 시설복구사업(도로)	1,082,149	1,425,630	75,880	134,159
재해예방사업	1,905,500	144,459	1,867,905	16,781
재해복구사업	2,686,639	46,999	1,353,160	1,286,479
재해위험지역정비(급경사지)	6,274,116	4,240,586	3,020,860	125,632
통합관제센터 운영	533,186	0	503,589	29,596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1,389,560	0	1,310,222	79,337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10,186,971	2,432,711	9,554,823	129,649
도시재생 활성화	1,295,255	108,403	1,152,552	34,299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755,731	0	683,577	19,693

세부사업	예산현액	이월액	지출액	예산대비 집행잔액
슬레이트 처리지원	1,638,952	0	1,579,443	59,509
쓰레기 자원화 및 관리	627,744	0	607,748	19,995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1,956,505	0	1,946,500	10,004
정책숲가꾸기지원	2,484,671	0	2,452,227	11,365
미세먼지저감 숲 가꾸기	2,109,211	445,814	1,474,170	66,229
산림보호사업	2,389,660	0	2,157,978	231,681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955,515	0	913,789	17,539
브랜드축산물 촉진사업	786,000	0	764,671	21,329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856,683	0	791,414	65,269
농기계 공급 지원	550,000	0	538,885	11,115
벼 병해충 방제	637,500	0	616,010	21,478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	2,254,000	0	2,182,995	50,302
논 타작물 재배지원	1,367,284	0	1,153,865	29,878
노지채소 경쟁력 강화	682,371	35,200	547,975	99,195
유기질비료 지원	2,266,129	0	1,618,039	478,781
국가예방접종 실시	691,861	331,320	544,850	51,336

※예산액 500백만원 이상만 반영

### ○ 문제점

- 예산편성시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시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지체없이 추가경정 예산에 감액하여 예산의 집행과 운용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지출잔액이 발생 하게 된 점은 적절치 못한 사항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지 못한 점은 사업추진에 적극성이 결여된 사항으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 발생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8) 예산이월 발생 최소화 방안 강구

### ○ 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이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계	127,713	66,504	30,880	30,329
일반회계	124,729	65,394	29,072	30,263
특별회계	2,984	1,110	1,808	66

### ○ 문제점

- 예산이월제도는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로 운영되고 있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못할 경우(예산운영상 신축성) 이월은 가능하나,
- 2020회계연도 이월액은 2019회계연도에 대비해 29,25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부사업에서는 예산현액 전부를 이월 처리하였음.

### ○ 개선 및 권고사항

- 사업의 성질상 부득이하게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 국도비 등 보조금을 수반하는 사업 외에 순수 군비만 투입되는 사업은 추경예산에 조정·검토하여 타 사업으로 재편성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함.
- 당초부터 연도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예산이월로 처리하지는 않았는지, 전년대비 과다증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 9) 저금리에 따른 사업성 기금운용 재검토

### ○ 문제점

- 사업성 기금은 과거 금리가 높을 때 이자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자 기금을 설치 운영하였으나 최근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자수입 감소로 사업비가 축소되는 실정임.

### ○ 개선 및 권고사항

- 일부 사업성 기금은 조성액 대비 고유목적 사업비 규모와 비율이 낮아 기금을 운용하는 것보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 기금의 운영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부서에서는 조성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이 필요함.

## 10)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철저

### ○ 현황

(단위 : 천원)

종 류 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비고
		합 계	증 가 액	지 출 액		
합 계	1,258,466,559	384,593,001	12,276,925,721	11,892,332,720	1,643,059,560	
보증금	157,953,080	20,866,550	26,379,780	5,513,230	178,819,630	
보관금	313,185,850	177,779,670	469,224,130	291,444,460	490,965,520	
잡종금기타	787,327,629	185,946,781	11,781,321,811	11,595,375,030	973,274,410	

### ○ 문제점

-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하면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금 중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0년도 결산기준 세입세출외 현금 1,643,059천원은 2014년부터 이월된 현금으로 채권자가 분명한 자금은 반환조치, 그 외 자금은 세입조치 하여야 함에도 장기보관 관리.

### ○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내역을 분석하여 절차에 맞게 반환 및 세입조치가 요구됨.

## 11)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대책 마련

### ○ 문제점

-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1,096,777천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07,471천원,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127,727천원,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97,420천원에 이르고 있음.
- 체납 사유별로는 무재산, 납세태만, 행방불명등이 있음.

### ○ 개선 및 권고사항

- 실질적인 징수대책 마련,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고 지능적으로 납부를 회피하지 않도록 체납자를 관리하고 징수불능분은 원인분석 후 결손처분 등의 절차를 이행하기 바람.

## 12) 특별회계 운영 검토

### ○ 현황

(단위 : 천원)

회계명	연도	예산현액	목적사업비 집행현황	비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18	1,466,399	18,670	
	2019	1,491,673	0	
	2020	1,491,999	0	

### ○ 문제점

-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2년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 하였으나 최근 2019, 2020년 운영실적이 없는 상태로 예산만 확보한 상태임.

### ○ 개선 및 권고사항

- 특별회계의 목적과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존속·폐지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하여 재정비 할 것을 권고함.

### 13)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재정건전화 방안 강구

#### ○ 현황

- 상수도 사용료 수익 미수금이 260,560천원, 이월미수금 107,911천원 등 전체 미수금이 368,427천원에 달함.
-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019년 35.22%에서 2020년 27.72%로 하락되었음.

#### ○ 문제점

- 일반회계 전입금이 7,779,969천원으로 전체예산의 59.7%에 달하나 미수금이 늘어나고 있고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더 하락하고 있어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음.

#### ○ 개선 및 권고사항

- 다양한 방법으로 상수도요금 미수금을 정리하고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제고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일반회계의 부담률을 줄여나가야 할 것임.

### 3. 수범사례

#### □ 제 목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깨끗한 식당만들기 사업

##### ○ 개 요

###### - 추진배경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다중이용시설인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소독, 청소 등 방역을 실시하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자 함.
- 다중이용 업소인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소독, 청소 등 방역을 실시하여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예방과 더불어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

###### - 세부추진 계획

- 대 상 : 관내 일반음식점 50여개 업소
- 사업범위 : 시설 내 소독, 청소 등 감염병 관리를 위한 방역 일체
- 사업기간 : 2020. 4. ~ 2020. 9.(6개월간)

##### ○ 기대효과

- 청결한 외식문화 조성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위생상태 취약업소 중점관리로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 다중이용시설 관리로 코로나19 감염증 지역사회 확산방지

##### ○ 사진대장



# IX. 전년도 결산검사 조치내용

## 1. 2019회계연도 잉여금 발생 분석

### 가. 전년도 권고사항

- 결산상 잉여금 발생 비율이 높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잉여금 발생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해연도 예산을 원만히 집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예산확보 계획 수립시 정확한 분석을 통해 향후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 할 것을 권고함.

### 나. 조치결과 및 검토

- 잉여금 발생 분석을 통해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인해 잉여금이 감소함.
- 사업추진에 있어서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 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계속해 나가겠음.

## 2. 세입예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일부항목 편중 발생

### 가. 전년도 권고사항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합계 3,290,399천원이나 그 중 임시적 세외수입 불납결손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3%인 490,848천원,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2%인 1,511,933천원으로 미수납액 발생비율이 높음.
- 임시적 세외수입 담당 부서에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함.

### 나. 조치결과 및 검토

-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부서를 대상으로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과감한 결손처분을 독려하였으며, 그 결과 징수 불가능한 고액체납을 적극적으로 정리하였음.

### 3. 일부항목에 대한 성과지표 상향조정 검토 요구

#### 가. 전년도 권고사항

-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군의 실정상 농촌지역의 고령화된 군민들을 위한 정보화 교육 대상자를 대폭 늘려 나가야 할 것이며,
- 군민들의 다양한 정보공유와 대외적인 군정 홍보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방문자수에 대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함.

#### 나. 조치결과 및 검토

- 고령화된 군민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상자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대외적인 군정 홍보 강화를 통해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으면 그로인해 우리군 홈페이지 방문자수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임.

### 4. 예산편성액 중 일부항목 예산액 전부 전용처리

#### 가. 전년도 권고사항

- 예산 전용이라 함은 예산집행에 있어 부득이 각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이나 동일사업 내 목 그룹 간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
- 예산액 전체를 전용처리 하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심의 이후 승인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일뿐더러 사업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준비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결과로,
- 차후에는 철저한 분석과 사전준비로 예산 전체를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함.

#### 나. 조치결과 및 검토

- 예산편성시 사업부서의 요구와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다음년도 사업에 대한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예산전용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5. 보조금 실제 반납액 과다 발생

### 가. 전년도 권고사항

-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18%정도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52억여위 반납처리 되었음.
- 세출예산편성을 실제 소요액보다 많이 편성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예산 편성시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과 정확한 수요 측정으로 예산불용 및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 할 것을 권고함.

### 나. 조치결과 및 검토

- 국도비 보조금은 중앙 및 도의 사업비 확정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익년도 사업에 대한 중앙 및 도 사업비 신청 시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보조금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입찰차액 등 시설비 집행 잔액은 설계변경 등을 통해 동일 사업과 관련한 부대사업에 재투자 되도록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겠음.
- 아울러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에 따라 보조금 예산편성 및 보조사업자 선정 시 민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는데 과년도 보조사업 포기이력이 있는 사업 신청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민간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확보하여 중도 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처를 기하겠음.

## 6. 세입예산 미수납액 징수대책 마련

### 가. 전년도 권고사항

- 미수납액 95%를 차지하고 있는 납세태만이나 자금압박을 이유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공무원의 관심도나 징수의지에 따라 징수율을 더 많이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바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함.
- 기타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보다 세밀하고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미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나. 조치결과 및 검토

- 납세태만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징수율 제고를 하였음.
-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미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를 위한 징수 대책 보고회 개최로 체납액 사유 분석 및 실질적 징수대책 수립 시행

## 7. 국비를 수반한 주요 사업 중 종합 진도율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

### 가. 전년도 권고사항

- 영상테마파크 실내스튜디오 조성사업은 종합 진도가 극히 부진(5%)하므로 우리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권고함.
- 종합 진도가 부진한 상하수도 사업 분야 3개 사업에 대하여는 군민들에게 깨끗한 물 공급과 신속한 하수처리로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권고함.

## 나. 조치결과 및 검토

- 영상테마파크 실내스튜디오 조성사업은 준공일 맞춰 진행되고 있으며, 준공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상하수도 사업 및 기타사업에도 군민들의 질 높은 삶과 국비지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8. 공공기관 대행사업 지연에 따른 관리 철저

### 가. 전년도 권고사항

- 담당부서와 위탁기관과의 주간 대면협의를 통해 사업기간 만료 사업장에 대한 인수인계 관련 서류 및 마무리 공사 이행 촉구 및 검토.
- 분기별 현장점검, 사업변경 시 관련서류 검토 등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추진



과정 관리·감독 철저히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고,

- 현재 일괄 교부하는 당해 연도 위탁사업비를 사업진도에 따라 기성금 형식으로 분할 교부.
- 준공된 시설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 다양한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노력.
- 농어촌공사에서 준공이후 인수인계 지연으로 인해 시설물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법적 조치방안 검토 또는 패널티 적용을 권고하고 인수인계 지연에 대한 차선책으로 점진적으로 합천군에서 직영 확대 할 것을 권고함.

#### 나. 조치결과 및 검토

- 농어촌공사와 간담회 시 사업완료 즉시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수회 요청 및 공문으로 준공 추진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있음.
- 현재 완료지구 중 준공검사 신청서가 미 접수된 사업장은 조속히 인수인계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추후 사업완료 기간이 도래하는 사업장은 완료 즉시 준공검사 신청 후 인수인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 9. 세출예산 중 이월사업 최소화 노력 경주

#### 가. 전년도 권고사항

- 사업의 성질상 부득이하게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 국도비 등 보조금을 수반하는 사업 외에 순수 군비만 투입되는 사업은 추경예산에 조정·검토하여 타 사업으로 재편성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함.

#### 나. 조치결과 및 검토

- 이월제도는 재정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의 기능도 있지만, 이월 사업비의 증가와 이월사업이 고착화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저해하는 요인이라 사료됨
- 예산편성 시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 행정절차이행 및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등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인센티브 제공도 적극 검토하겠음.

## 10. 특별회계 실체 간 자금 진출입 부적정

### 가. 전년도 권고사항

- 일반회계 진출 가용재원은 특별회계 사용목적에 맞게 사회간접 자본시설 건설 등 특정 용도의 재원으로 사용이 요구됨.

### 나. 조치결과 및 검토

- 특별회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 11.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 철저

### 가. 전년도 권고사항

-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사유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유에 맞는 징수절차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과다 장기 체납사례가 없도록 실질적인 징수 대책이 요구됨.

### 나. 조치결과 및 검토

-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 분석을 통해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수립하여 미수납액에 대해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12. 기금조성 기부금 관리 철저

### 가. 전년도 권고사항

- 지정된 자발적 기부금은 관계 법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서 사용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 나. 조치결과 및 검토

- 기부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를 하고 있음.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심의절차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13. 기금조성 운용 관리 철저

### 가. 전년도 권고사항

- 기금 조성을 함에 있어서 가급적 목표 달성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등 효율적인 기금 증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저금리시대에 이자수입을 증식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 및 기금 목적에 따라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

### 나. 조치결과 및 검토

-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통해 기금의 설치목적은 달성할 수 없거나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겠음.
- 저금리시대에 이자수입을 증식시키기 어렵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자통합하는 등 기금 사업 운용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음

## 14.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철저

### 가. 전년도 권고사항

- 2019년도 결산기준 세입세출외 현금 172,986천원은 2014년부터 이월된 현금으로 채권자가 분명한 자금은 반환조치, 그 외 자금은 세입조치 하여야 함에도 장기보관 관리
-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내역을 분석하여 절차에 맞게 반환 및 세입조치가 요구됨.

### 나. 조치결과 및 검토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위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반환조치 및 세입조치를 위해 노력하겠음.